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3년 3월 7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3월 9일

3. 제안이유

- 가.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육성
계획(5년) 및 시행계획(1년)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나. 데이터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주체 및 내용 등을
명확히 하는 한편,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가. 빅데이터 활용 및 산업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나. 도지사가 추진하는 데이터산업 육성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다.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라. 수탁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신설(안 제15조)
마. 위원회의 명칭·구성 변경 및 비상설 형태로 전환(안 제8조·제9조)
바. 심의 대상 안건 관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11조)

5.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

가. 제출배경

- 현행 조례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산업과 기술환경 속에서 빅데이터의 활용 및 데이터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8년도 4월 6일 제정되었음
- 데이터 산업은 데이터의 생산·유통·거래·활용 등 일련의 과정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유망 산업으로, 이를 더욱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조례 시행과정에서 위원회 운영과 사업추진에 있어 제도적 개선, 조문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바 전부개정을 통해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데이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음

나. 조례안의 주요 개정 조항에 대한 의견

- 안 제4조는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제3항을 신설함으로써 급변하는 빅데이터 산업의 흐름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도정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기본법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에는 정부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정부시책에 대한 도정 대응의 시의성이 문제될 수 있음
- 안 제9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제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에서 과학인재국장과 업무 담당 과장으로, 제4항에서 간사를 업무담당 과장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격하’한 것과

- 제7항에서 위원회를 안전이 있을 때만 구성하고 심의·자문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하도록 하여 비상설기구로 운영하려는 것은 관(官)주도로 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각종 위원회가 과다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려는 것은 설득력은 있으나,
- 데이터 산업의 특성상 민간의 기술력과 경험 등 민간 전문가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민간(民間)주도가 아닌 관(官)주도의 위원회 운영은 획일화되고, 경직된 위원회 운영이 우려되어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관련 부서의 구체적이고 보편·타당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제3항제1호에서 위촉직 위원 중 충청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을 ‘삭제’ 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원의 참여를 제한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안 제11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으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과 비교할 때, 제척 등의 사유를 강화(제1호)하거나 완화(제3호)하여 규정하였음⁸⁾
- 제3호에서 위원이 해당 안전에 관한 증언, 감정 외에 진술, 자문, 연구, 용역을 삭제하여 제척·기피·회피 조건을 완화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생략)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생략)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생략)	2. (생략)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급변하는 빅데이터 산업의 흐름에 대응하여 데이터 산업 관련 지역 내 전문 인력을 양성, 전문적이고 유연한 위원회 운영 등을 새롭게 규정한 것으로 개정안 내용은 대체로 적절하고 타당함
- 다만 이 조례의 근거법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에서 정부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의 5개년 육성계획이 정부의 시책과 엇박자가 될 우려가 있어, 도정의 적시 대응이라는 시의성 문제에 지장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위원회 구성을 현행 조례와 비교했을 때 ‘격하’한 것,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앞서 지적한 사항들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보편·타당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